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37,650,240	7,129,507
일반회계		225,370,240	6,761,107
특별회계		12,280,000	368,400
	기타특별회계	12,280,000	368,4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82,486	14,475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369,906	11,097
	주차장 특별회계	7,978,344	239,350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549,515	76,485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890,750	26,723
	기반시설 특별회계	8,999	2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72,83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제2회 추경 후 201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구비 부담분 포함),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의결(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한다.